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11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이정헌・박홍배・박민규

김 현・황정아・허성무

최민희 • 한민수 • 김영환

정진욱 · 임미애 · 박희승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와 종사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명, 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함(안 제87조).
- 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해한 자를 처벌함(안 제106조).
- 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단체 또는 편성위원회로 부터 시청자위원회위원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8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감사 등(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 임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放送編成責任者를"을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放送프로그램 製作"을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으로, "취재 및 製作"을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으로,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를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 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둔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4. 시청자위워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 사자는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 및 그 준수 여부
 -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준수 여부

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각계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계층의"로 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업자

제10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에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해한 자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 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21호의2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 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 나.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 지 아니한 자
- 다.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 1의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u><신 설></u>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
	사장, 감사 등(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포함
	한다) 임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
	<u>다.</u>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	③제4조의2에
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	<u>방송편성책임자를</u>
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	
야 한다.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4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	
는 <u>放送프로그램製作</u> 의 자율성	<u>방송프로그램</u> 취재·보도·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u>제작•편성</u>

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u>製作</u>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u>放</u> -----<u>제4조의2에 따른 편</u> 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 <u>• 편성</u> 부문---------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 성규약을 공표----.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 성 등)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 성위원회를 둔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 ·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의 <u>취재·보도</u>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에 관한 사항
 -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생략)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 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 야 한다.
 - 1. ~ 5의2. (생 략) <u><신 설></u>

-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

 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와 종사자는 편성위원회의 심 의·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 _____
 - 1. ~ 5의2. (현행과 같음)
 -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

<신 설>

6. (생략)

④ (생략)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第87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 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 ----를 두어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 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 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 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 촉한다.

③ (생 략)

및	ユ	준수	여부

-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 항 준수 여부
- 8. (현행 제6호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月87條(視聽者委員會)	(1)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
 - -----.
 - ③ (현행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 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신 설>

2. ~ 6. (생 략) ② (생 략)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u>위반하</u> 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신 설>

<신 설>

第106條(罰則)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조의2에 위반하여 편
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
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
<u>해한 자</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1위반하
1. <u>커딘이</u>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u>에 6 이 도 왕위 글 원 기</u>
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
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
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
임자를 선임한 자
나.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
<u>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u>

<신 설>

<신 설>

<신 설>

1의2. · 1의3. (생략)

2. ~ 21. (생 략) <신 설>

22. ~ 28. (생략) ②·③ (생략) 다.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 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1의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

1의3.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의4.・1의5.(현행 제1호의2

2. ~ 21. (현행과 같음)

및 제1호의3과 같음)

21의2.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 2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